

경상북도체육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2.08.31.

개정 2023.12.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체육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경상북도체육회관 건립추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경상북도체육회관(이하“체육회관”이라 한다)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체육회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체육회관 건립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
3. <삭제 2023.12.28>
4. 그 밖에 체육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체육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,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<삭제 2023.12.28>

1. <삭제 2023.12.28>
2. <삭제 2023.12.28>
3. <삭제 2023.12.28>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23.12.28.>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 또는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
4. 그 밖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. 다만,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운영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2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8조(실무위원회의 설치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회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0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의 준수)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 (2022.08.31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3.12.2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경북체육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본다.